

신속처리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
	사업장 소재지 (우편번호)				
	대표자명		전화번호		전자우편
신기술·서비스	명칭				
	유형	[] 기술인 경우 [] 서비스인 경우 []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			
	주요 내용				
소관 부처 및 기관 (선택적 기재)	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				
	예상되는 허가 등				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1부		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청 신청자	→	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	→	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	→	검토 후 회신(30일 이내) 관계기관의 장	→	결과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